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B3205]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하이일드채권투자 위험, 투기등급 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뱅크론 유동성 및 환매위험, 뱅크론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비교지수(벤치마크) : <u>S&P/LSTA Leveraged Loan 100 Index(USD) 90% + 3개월 Libor(USD) 10%</u></p> <p>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특히, 이 투자신탁은 매입신청,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과 <u>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 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뱅크론 관련 인덱스를 추종하는 Passive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부 및 무담보부 후순위 대출채권, 차순위 담보부 대출채권, 후순위 브릿지론(이하 "주니어론, Junior Loans"이라 함), 기타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채무증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존 관리인 유지(debtor in possession) 론, 메자닌 론, 고정금리부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 선정을 위해 <u>하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개별 기업</u> 등의 재무상황 및 업계 내 지위, 경제 및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	--

			기구 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상무)	43개	6,527억원	-5.95%	-2.28%	-5.96%	-2.28%	14년7개월
조은서	1987	부책임(차장)	15개	1,271억원	-	-	-5.96%	-2.28%	2년 5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모투자신탁의 피 투자펀드가 투자 하는 기초자산 (하이일드 채권) 투자위험	<p>하이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모투자신탁의 피 투자펀드가 투자 하는 기초자산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Bank Loan))에, 그리고 일부분을 해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p>

<p>(뱅크론)투기등급 관련 투자위험</p>	<p>여 투자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뱅크론은 대부분 관련 국가의 증권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분석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원본손실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시장위험</p>	<p>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p>
<p>모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뱅크론) 유동성 및 환매위험</p>	<p>뱅크론은 정부규제가 적은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계약적 권리관계의 이전이기에 유동성이 낮고 매매가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 불리한 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경우, 급격한 유동성의 축소는 투자신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는 증권위원회에 등록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정보보다 폭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용 가능한 대출채권의 공급 또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공급이 제한적인 기간에는 투자신탁의 성과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비정상적인 거래, 광범위한 호가스프레드, 연장된 결제기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p>모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뱅크론)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위험</p>	<p>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규 뱅크론의 공급 증가, 발행자의 신용상태저하 등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는 뱅크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재조달(Refinancing)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낮은 수익률의 자산에 재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시 뱅크론의 금리조정주기와의 시차로 인하여 뱅크론의 가격(Valuation)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뱅크론과 변동금리 채권은 고정금리 채권보다 이자율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으나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가격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일부 뱅크론은 유동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장환경은 뱅크론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장기일수록 이자율에 따른 가치 변동성은 증가됩니다.</p>
<p>모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뱅크론) 법률위험</p>	<p>뱅크론은 유가증권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관계이기에 발행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관계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관계는 원리금 회수 및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동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위험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p> <p>(1) 대출자 책임(lender's liability) 위험: 대출자가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발행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발행자가 적정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비싼 금리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p>

		<p>(2) 형평적 종속(equitable subordination) 위험: 대출자가 발행자의 경영에 개입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다른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파산한 발행자에 파생상품을 자문한 대출은행의 경우)</p> <p>(3) 양도 및 참가권부 투자(loan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s) 위험: 투자신탁의뱅크론 투자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 및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i)직접적으로 대출자로부터 양도(assignments)를 받거나 ii)간접적으로 참가권매입(purchase of participations)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받는 경우 투자신탁은 발행자와 직접적인 계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출자의 지위를 가지나 승계받은 론 및 담보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양도기관이 가지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가권매입의 경우 투자신탁은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와의 계약관계만을 가지며 의무 및 권리행사 또한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발행자뿐 아니라 참가권 매도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노출됩니다.</p> <p>(4) 채권자취소(fraudulent conveyance) 위험: 발행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부도 전에 고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 양도거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상복구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p>
<p>※ 상기 언급한 뱅크론 관련 위험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뱅크론 관련 위험이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투자위험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매입 방법</p>	<p>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 수수료</p>	<p>없음</p>	
<p>기준가</p>	<p>산정방법</p>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p> <p>-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p>과세</p>	<p>구 분</p>	<p>과세의 주요내용</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투자신탁 결산 이후 환급되며, 해당 모투자신탁의 환급비율에 따라 환급 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급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환급세액은 예상 환급비율에 따라 매일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최초설정일 기준 1좌=1센트	
효력발생일	2020년 11월 04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등(F)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